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영천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1. 8.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37건	19	17	3	23,283	1	11,027	5	90,228
1	○ ○ ○ ○ ○	영천시 ●●회 지정기탁금 접수 방법 및 운영 부적정(기관경고)	-	1	-	-	-	-	-	-
2	□ □ □ □ □ ● ●	○○○○ 캠핑장 관련(기관경고)	1	-	-	-	-	-	-	-
3	○ ○ □	승진예정 직급 조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	1	-	-	-	-	-	-
4	○ ○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부적정	1	-	-	-	-	-	1	5,419
5	○ ○ ○ ○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미이행	-	1	-	-	-	-	-	-
6	○ ○ ○ ○ □ 12개 읍면동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발급 및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1	-	1	787	-	-	-	-
7	○ ○ ○ ○ ○	국외여행 식비 미반환	-	-	-	-	-	-	-	-
8	○ ○ ○ ○ □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	1	-	-	-	-	-	-
9	○ ○ ○ ○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법인카드 관리 소홀	1	-	1	217	-	-	-	-
10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	1	-	-	-	-	-	-
11	○ ○ □	물품 입찰 실적제한 부적정	-	1	-	-	-	-	-	-
12	○ ○ ○ ○ □	●●●●●● 부근 공영(노상)주차장 위탁 관리 부적정	1	-	-	-	-	-	-	-
13	○ ○ ○ ○ □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 부적정	-	1	-	-	-	-	-	-
14	○ ○ ○ ○ □	공기관 대행사업 정산 부적정	-	1	-	-	-	-	-	-
15	○ ○ ○ ○ □ 실 ● ● ● ● □ 과 ◎ ◎ ◎ ◎ □ 과 ◇ ◇ ◇ ◇ □ 과 ◆ ◆ □ 과	보조사업 이월 부적정	-	1	-	-	-	-	-	-
16	○ ○ ○ ○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부적정	-	1	-	-	-	-	-	-
17	○ ○ ○ ○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처분 미이행 및 소관부서 미통보	1	-	-	-	-	-	-	-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18	○ ○ ○ ○ 과	비료관리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미이행	-	1	-	-	-	-	-	-
19	○ ○ ○ ○ 과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1	-	-	-	-	-	-	-
20	○ ○ 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신고수리 부적정	-	1	-	-	-	-	-	-
21	○ ● ● ● ● 과	시유임야 관리 부적정	-	1	-	-	-	-	-	-
22	○ ○ ○ ○ 과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급·관리 부적정	-	1	-	-	-	-	-	-
23	○ ○ ○ ○ 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미부과	1	-	-	-	-	-	1	985
24	○ ○ ○ ○ 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부적정	1	-	-	-	-	-	1	8,000
25	○ ○ ○ ○ 과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실적보고 관리 소홀	1	-	-	-	-	-	-	-
26	○ ○ ○ ○ ○ 과	지붕위 전기(태양광)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 부적정	-	1	-	-	-	-	-	-
27	○ ○ 과	● ●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부적정	1	-	-	-	-	-	-	-
28	○ ○ ○ ○ ○ ○ 과 ● ● 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연장 등 부적정	1	-	-	-	-	-	-	-
29	○ ○ ○ ○ 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	-	-	-	-	-	-	-
30	○ ○ ○ ○ 과	● ● ● ● ● ● ● ● ● ● ● ● ● ● ● ●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1	-	-	-	1	11,027	-	-
31	○ ○ ○ ○ ○	● ● ● ● ● ● ● ● ●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	-	-	-	-	-	-
32	○ ○ ○ ○ 과	● ● ● ● ● ● ● ● 사업 추진 부적정	-	1	-	-	-	-	-	-
33	○ ○ 과	도로점용허가 권리 의무·승계 업무 부적정	1	-	-	-	-	-	1	25,000
34	○ ○ ○ ○ ○ 과 ● ● 과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1	-	1	22,279	-	-	-	-
35	○ ○ ○ ○ ○ 과	건축신고 업무 부적정	-	1	-	-	-	-	-	-
36	○ ○ ○ ○ ○ 과 ● ● ● ● ● 과	○○○○○○○○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1	-	-	-	-	-	-	-
37	○ ○ ○ ○ ○ 과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1	-	-	-	-	-	1	50,824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 · 주 의 요 구

제 목 영천시 ●●회 지정기탁금 접수 방법 및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영천시 ○○○○○에서는 (재)영천시●●회 법인을 설립하여 재단사무국의 기부금 및 기탁금 접수 업무 및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 등의 업무를 영천시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1. (재)영천시●●회 지정기탁금 접수방법 부적정 및 접수결과 보고 미이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으며,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라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발적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에서는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현금/계좌입금 수령)하려고 하는 경우, 자발적 기탁금을 기탁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은 후 영천시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이 가결 결정(승인)된 후에 지정 기탁금을 접수(현금/계좌입금 수령)하여야 하며,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현금/계좌입금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에서는 「영천시 ●●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2011. 10. 5. 시행)에서 ●●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재단법인 영천시●●회 운영세칙」(2003. 2. 14. 시행)에서는 ●●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천시 ●●회 사무국장을 ○○○○○장으로 하며 ○○○○○ 공무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법인영천시●●회 사무국 업무 전반을 영천시 소속 ○○○○○ 직원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기탁자에 대하여 “지정기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영천시청 방문을 통하여 지정기탁서를 제출 받은 후에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지 않고 (재)영천시●●회 지정계좌로 지정기탁금을 먼저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18년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13,283명으로부터 36,848건 3,593백만 원의 자발적 기탁에 대하여 다음연도 또는 분기별로 사후 일괄심의를 거치는 방법을 통해 자발적 기탁금 3,593백만 원(2018. 1. 1.~2021. 4. 15.까지 접수금액)을 접수(현금의 수령)하였고,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8. 4. 11.부터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자발적 기탁금 접수 사실을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표 1] 자발적기탁금 부적정 접수처리 현황

연도별	지정기탁자 인원 (명)	지정기탁 건수 (건)	지정기탁금 접수금액(백만 원)	심의시기
합계	13,283	36,848	3,593.85	
2018년도	4,394	12,179	1,606.15	지정기탁금 접수후 심의
2019년도	3,691	10,365	749.39	"
2020년도	3,479	9,704	614.36	"
2021년도	1,719	4,600	623.95	"

2.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 선정으로 공정성 저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등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 등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설립 허가 조건을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으로부터 2002. 12. 16.자로 재단법인 영천시●●회 법인설립허가서(허가 제14-90호)를 교부받으면서 법인설립 허가조건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영천시●●회 정관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제2항에 따르면 영천시장학재단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영천시●●회 운영세칙 제11조(지원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영천시●●회 정관 제4조에 의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서 및 공적을 명기하여 이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장학사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이사회 소집시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 장학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 누구나 동등한 장학금 신청과 수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장학생 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장학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의 허가 조건 등에 따라 객관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수혜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장학금의 지급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 성적 이상을 취득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등 자체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장학생을 선발 할 때에는 별도의 “장학생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각 학교 및 단체 등에서 장학생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장학생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자체 장학생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안건 보고 등 내부 의결만으로 장학생을 선정하여 자의적인 장학생 지급 대상자 변경 및 특정인 선정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표 2] 장학생선정심의위원회 미개최 현황

연도별	장학사업명(종)	장학금 지급		심의회 개최		심의회 미개최	
		인원 (명)	금액 (천 원)	인원 (명)	금액 (천 원)	인원 (명)	금액 (천원)
합 계	62종	1,437	1,784,986			1,437	1,784,986
2018년	성적우수장학등 15종	320	419,936			320	419,936
2019년	성적우수장학등 18종	471	695,800			471	695,800
2020년	성적우수장학등 16종	363	414,250			363	414,250
2021년	성적우수장학등 13종	283	255,000			283	255,000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영천시 ○○○○○에서는 재단법인영천시●●회 장학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장학사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이사회 소집시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2019년도 30,000천 원을 장학사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만 부당하게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표 3] 장학사업심사위원회 미개최 현황

연도별	장학사업 종류	장학사업 집행		심의회 개최		심의회 미개최	
		건	금액 (천 원)	인원 (명)	금액 (천 원)	건	금액 (천 원)
2019년	교육환경개선사업 “◇◇◇◇◇ ◇◇◇◇◇ ◇◇◇◇◇”	1	30,000			1	30,000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3. 특정 대학·학과 진학 및 재학생 장학금 및 특정학교 교사 교사연구비 차별지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등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 등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설립 허가 조건을 반드시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으로부터 2002. 12. 16.자로 재단법인 영천시●●회 법인설립허가서(허가 제14-90호)를 교부받으면서 법인설립 허가조건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영천시●●회 정관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제2항에 따르면 영천시장학재단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정 대학·학과진학 장학금에 대해 의견 표명¹⁾한 바 있다.

따라서 영천시 ○○○○○에서는 재단법인영천시●●회의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과 정관 등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에서는 재단법인영천시●●회의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관련법령과 정관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대우한다는 이유로 차별하여 적용하는 사업계획 기준을 수립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2018년부터 2021. 5. 28.까지 총131명에 대하여 308,500천 원을 장학금(93명, 188,500천 원)과 교사연구비(38명, 120,000천 원)로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였다.

[표 4] 영천시●●회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및 장학사업비 차별 지급 현황

연도별	장학사업명	인원 (명)	지급액 (천 원)	차별규정 포함 내용 (지원내용 및 선발기준)
합계		131	308,500	
2018년	명문대입학 및 수능성적우수 생활비지원	16	41,000	사업계획서 - ◆◆◆ 신입생 및 재학생 - 명문대, □□편입, ■■■진학자 - ◆◆◆, △△△△, ▲▲▲▲, ▽▽▽, ▼▼▼, ☆☆☆☆, ★★
	◁△중학교 내 우수 교장, 교감, 교사 연구비 지원	19	60,000	사업계획서 - ▷중학교

1) 2019. 12. 26. 국가인권위원회, “특정대학과 특정학과를 진학했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선 필요

연도별	장학사업명	인원 (명)	지급액 (천 원)	차별규정 포함 내용 (지원내용 및 선발기준)
2019년	명문대입학 및 수능성적우수 생활비지원	29	49,500	사업계획서 - ◆◆◆ 신입생 및 재학생 - 명문대, □□편입, ■■■진학자 - ◆◆◆, △△△△, ▲▲▲▲, ▽▽▽, ▼▼▼, ☆☆☆☆, ★★
	◁중학교 내 우수 교장, 교감, 교사 연구비 지원	19	60,000	사업계획서 - ▷중학교 특정학교 지정
2020년	명문대입학 및 수능성적우수 생활비지원	29	63,500	사업계획서 - ◆◆◆ 재학생 - 명문대, □□편입, ■■■진학자 - (한)의예과, 치의예과 입학자 - 명문대학기준 10위권 이내 대학
2021년	내신및수능성적우수자 생활비지원	19	34,500	사업계획서 - ◆◆◆ 재학생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4. 출연기관에 대한 증액 출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출자출연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군 자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의 기준은 해당 회계 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표 5] 출연기관 증액 출연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결과 공개 미이행 현황

(재)영천시●●회 출연금	연도별 출연 금액 (단위:천 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천시●●회 ****사업 출연금 (타당성 검토 대상 : 직전 회계 연도 출연금의 110/100 이상인 경우)	900,000	9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직전년도 대비 증액 금액		-	100,000	-	-
직전년도 대비 증가 비율			111%		
타당성 검토 여부	미대상	미대상	미이행	미대상	미대상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여부	미대상	미대상	미공개	미대상	미대상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영천시 ○○○○○에서는 사업비를 출연함에 있어 재단법인영천시 ●●회가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으로서 2018년도 900백만 원에서 2019년도 1,000백만 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액(100백만 원)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영천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 위원회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대한 심의·의결을 이행하지 않고 출연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영천시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기회를 일실하게 하였으며 영천시 주민 등에게 증액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회 운영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영천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기관경고)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기 관 경 고 · 시 정 요 구

제 목 ○○○○ 캠핑장 관련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을 ◆◆◆◆◆ 운영위원회에 무상사용 승인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영천시 □□□□과에서는 야영장업 신청에 따른 수리 등 야영장업 등록활성화 및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야영장 안전점검 등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과의 경우

가. 불법운영중인 글램핑장 관리 소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7. 12월경 ●●과 지방■주사보 LLL 으로부터 글램핑장이 완공되어 변경등록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때 2018. 3. 15.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당시에 2017. 1. 19. 등록증 발급 당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설치되지 않았던 글램핑장 시설을 2017. 7. 28. 추가 설치하여 △△△△△소장 및 ◎◎면장이 참석한 개장식 행사와 함께 운영²⁾한 2017. 7. 28.부터 2018. 7. 28.까지 1년 동안 변경등록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 운영위원회와 AAA에 대하여 1차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했다.

2) 2017. 7. 28. 캠핑장 및 글램핑장 개장식 행사에 △△△△△소장 및 ◎◎면장이 참가 하여 글램핑장 개장을 행정기관에서 인지하였고 2017. 10. 1. 마을운영위원회 사무장 BBB의 밴드에 캠핑장 43면과 글램핑장 10동이 모두 예약 입주하였음을 공지하는 게시글을 확인함, 또한 밴드에서 계속해서 글램핑장을 운영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 글램핑장 시설과 관련하여 2017. 12월경 ●●과 지방■주사보 LLL으로부터 글램핑장이 완공되어 변경등록에 대한 문의를 받고 변경등록 안내하였으며 당시 ○○○○캠핑장·글램핑장을 운영하던 ◆◆◆◆ 운영위원회 사무장 BBB와 전화통화로 글램핑장 변경등록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던 GO캠핑을 안내한 후 변경등록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을 2018. 3. 15.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2017. 7. 28. 변경등록 없이 글램핑장 10동을 추가로 설치하여 야영장 시설을 변경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8. 3. 15. 점검 당시에 시설이 미비³⁾하여 보완중으로 보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시설이 보완되면 변경등록 하라고 설명만 한 후 캠핑장 및 글램핑 시설의 안전점검기록에는 적정한 것으로 기록한 후 글램핑장 운영에 대한 조사 및 별도의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고, ◆◆◆◆ 추진위원회(사무장 BBB)가 캠핑장 43면과 글램핑장 10동을 함께 2018. 4월경까지 변경등록 없이 운영하였고 불상의 이유로 2018. 5월경부터 ◆◆◆◆ 추진위원회 회원인 AAA가 캠핑장 43면과 글램핑장 10동을 사업대표자 변경등록 없이 운영하고 있는 등 2017. 7. 28. 부터 2018. 7. 28. 캠핑장 안전사고 발생일까지 1년 동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나.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의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3) 시설미비 : 소화기(밴드 확인시 있었고 현재도 있음), 손전등,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가 없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또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8. 8. 10. AAA를(2018. 5월경부터 운영하였다고 주장함) 미등록 야영장 영업 행위자로 고발하며 AAA가 영업하기 전 2017. 7. 28.부터 영업한 BBB 외 5인⁴⁾(2017. 7. 28.부터 2018. 4월경까지 운영)의 미등록 야영장 경영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를 모두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캠핑장 등록 승인된 12,000㎡ 중 일부 2,000㎡를 글램핑장 부지로 사용)내에 2017. 7. 28. BBB 외 5인이 글램핑 시설을 불법개장(10동)⁵⁾하여 사무장인 BBB가 캠핑장 43면과 함께 글램핑장 10동을 위탁운영(수익배분을 확인할 수 없음)하였고, 불상의 이유로 ◆◆◆◆◆ 운영위원회 회원인 AAA가 2018. 5월경부터 캠핑장 43면과 글램핑장 10동을 위탁 운영하다 2018. 7. 28.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2018. 8. 3. 미등록 야영장 영업에 따른 현장확인(글램핑)후 기존 등록된 ○○○○ 캠핑장과는 별도로 몇 명이 투자하여 글램핑장을 설치하여 캠핑장과 함께 운영하고 경영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고발당시 AAA씨가 당초 등록된 ○○○○ 캠핑장 대표이며 ◆◆◆◆◆위원장이라고 주장함) ●●과와 □□□□과 담당회의를 통해 고발여부를 논의하여 개별 투자한 BBB(2018. 7. 28. 최초 운영) 등 5명에 대하여는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AAA 만을 고발조치하여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4) 운영위원회회원 BBB 등 6명(BBB 5동, AAA 1동, CCC 1동, DDD 1동, EEE 1동, FFF 1동) 각각 1동당 1,2000 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수익이 발생하면 개별로 수익했다고 □□□□과에서는 주장함

※ 2017. 7. 28. 개장식 행사와 함께 영천시 △△△△△에서 ‘2017년 영천시▲▲▲▲▲ ▲▲▲▲▲’을 2017. 7. 27. ~ 2017. 7. 29.(2박 3일) 개최하여 글램핑장과 함께 캠핑장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영천시 ▽▽▽▽과-7465호)

5) 감사원 감사결과 ◆◆◆◆◆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 운영위원회의 지분투자로 판단하며 특정인에게 지분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다. 출장명령 및 출장보고서 제출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8. 8. 3. ○○○○캠핑장 미등록 야영장 영업에 따른 출장 용무를 시행하며 출장명령 및 신청을 출장지에 맞게 신청하고 명령하여야 했고 출장 용무를 마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2018. 8. 3. 영천시 ◎◎면 ◇◇리 ㄱ번지 ○○○○캠핑장 미등록 야영장 영업에 따른 출장과 2018. 8. 9. ○○○○캠핑장 현장 확인 출장 용무를 시행하며 □□□□과 지방▼▼주사 MMM은 2018. 8. 3. 출장신청서에 출장지를 ☆☆, ★★(관내)에 출장하는 것으로 2018. 8. 3. 08시 38분 신청후 상사의 결재(2018. 8. 6. 08시 48분 과장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출장명령 근무지와 다른 ○○○○캠핑장(◎◎면 ◇◇리)에서 출장 용무를 수행 하였고 2018. 8. 9. 출장신청서에 출장지를 ★★(관내)에 출장하는 것으로 2018. 8. 9. 7시 55분 신청후 상사의 결재(2018. 8. 10. 18시 28분 과장 결재, □□□□과장 장기재직휴가(2018. 8. 3. ~ 2018. 8. 9.)임에도 결재선을 잘못 올려 늦게 결재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출장명령 근무지와 다른 ○○○○캠핑장(◎◎면 ◇◇리)에서 출장 용무를 수행 하였고, 지방■서기 NNN은 2018. 8. 3. 출장신청서에 출장지를 ☆☆, ★★(관내)에 출장하는 것으로 2018. 8. 3. 08시 41분 신청후 담당과장 또는 직무대리권자의 결재는 받지 않고 담당팀장의 전대결 결재(2018. 8. 3. 08시 42분 결재)후 출장명령 근무지와 다른 ○○○○캠핑장(◎◎면 ◇◇리)에서 출장 용무를 수행 하였고 2018. 8. 9.은 상사의 출장명령 없이 ○○○○캠핑장(◎◎면 ◇◇리)에 출장⁶⁾하여 용무를 수행하였다.

6) 출장 사실 확인결과 출장자가 당시에 촬영하였다는 사진 자료(사진정보에 2018. 8. 3. 촬영일자 존재)가 있고, 출장자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출장지에 경로가 존재 하고 있어 출장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음

또한 2018. 8. 3. 출장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에도 현장출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운영자 및 소유관계 등을 추가 조사한 후 2018. 8. 10. 미등록 야영장 영업 행위자 고발(AAA)건과 비슷한⁷⁾ 시간에 출장결과를 보고하였다.

2. ●●과의 경우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 캠핑장 관리 직무태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111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83조,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사항 및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에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등록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7) 2018. 8. 3. 출장결과보고서 : 2018. 8. 10. 15시 45분 기안상신 2018. 8. 10. 16시 50분 결재완료
2018. 8. 9. 출장결과보고서 : 2018. 8. 13. 9시 50분 기안상신, 2018. 8. 14. 10시 21분 결재완료
2018. 8. 10. 고발문건 : 2018. 8. 10. 15시 55분 기안상신 2018. 8. 10. 17시 59분 결재완료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7. 7. 28. ○○○○ 캠핑장·글램핑장 개장 행사⁸⁾에 참석하여 현장 확인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미등록하여 운영하는 글램핑장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과에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글램핑장 개장행사에 참석하여 당초 무상사용 승인된 부지내 글램핑장(12,000㎡ 중 2,000㎡사용, 화장실 및 글램핑장 10동)과 글램핑장 중앙 공동화장실 및 샤워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천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부분은 사용자가 축조할 수 없는 영구시설(화장실 및 샤워장 1동)을 승인 없이 축조하여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원상복구 요구 하지 않았고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변경등록 없이 △△△△△△ 소장 GGG 및 ◎◎면장 HHH 등이 참석한 개장식 행사(●●과 담당자 지방■주사보 LLL도 개장식에 참석함, 당시 JJJ ●●과장, KKK <<<<<장과 동행함)를 하고 ‘2017년 영천시 ▲▲▲▲▲ ▲▲▲▲’을 2017. 7. 27. ~ 2017. 7. 28. (2박 3일) ○○○○ 캠핑장에서 실시하며 글램핑 사용료 1,448천 원을 지급하고 사용하여 야영장업 변경등록 또는 등록 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운영위원회 또는 사무장 BBB를 관련부서로 통보 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고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017. 12. 12. ◆◆◆◆◆ 운영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글램핑장 매입 요청건(해당 문건에는 글램핑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회의를 거쳐 설치한 사유 시설로 회신함)에 대하여 ●●과-32485호(2017. 12. 27)로 회신하며 변경등록 대상임을 안내만 하였고 □□□□과 NNN에게 유선으로(전화통화) 글램핑장 시설이 설치완료되어 있으니 변경등록 관련 안내를 요청하고 사무장 BBB의 휴대전화 번호를 안내만 하였을 뿐(추후 □□□□과 NNN이 사무장 BBB와 통화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변경등록 또는 등록이 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설치된 글램핑장과 건축물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운영위원회 사무장 BBB는 개장식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당시 참석한 ●●과 LLL은 ○○○○캠핑장에서 마을 고사를 하니 참석 해달라고 하여 현장확인 및 관리차원에서 참석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영천시 ●●과에서는 2018. 5. 10. 경상북도 ◀◀◀◀과의 2018년도 상반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지점검에 따라 2018. 5. 15. ▷▷▷▷▷공사에 현지점검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8. 5. 15. 이후 불상일에 담당팀장 및 ▷▷▷▷▷공사 직원과 함께 담당자인 PPP는 ◎◎면 ◇◇리 ㄱ번지 소재 ○○○○캠핑장을 점검하며 글램핑장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앞전 담당자(지방■■■주사보 LLL)로부터 별도의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 글램핑장도 자동차전용 야영장에 있던 시설로 인지하여 완공된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미등록 미등기된 건축물이 있음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등 행정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된 것으로 2018. 6. 5. 경상북도 ◀◀◀◀과로 보고하였고, 위법사항을 □□□□과로 통보하지 않았다.

나.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의 의무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111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제83조, 「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사항 및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에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등록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1조,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7. 12. 27. 글램핑장 매입요구에 대한 회시를 할 때 2018. 6. 5.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지점검을 할 때에도 글램핑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지함에 따라 공유재산에 축조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승인 없이 ○○○○ 캠핑장 시설물을 임의 변경한 ◆◆◆◆◆ 운영위원회에 철거요구를 하여야 했고, 2018. 7. 28. 안전사고 때 불상의 사유로 운영중이던 AAA 등 글램핑장 출자소유자들에게 글램핑장 및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2017. 12. 12. ◆◆◆◆◆ 운영위원회에서 글램핑장 매입 요청건에 대하여 32485호(2017. 12. 27)로 회신하며 공유재산에 설치할 수 없는 영구축조물과 승인 없이 설치된 글램핑장의 철거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2018. 5. 15. 이후 2018. 6. 5. 사이 점검기간 중 현장방문하여 글램핑장의 설치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유재산에 설치할 수 없는 영구축조물과 승인 없이 설치된 글램핑장의 철거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8. 7. 27. ○○○○ 캠핑장내 승인되지 않은 글램핑장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진행한 결과 ◆◆◆◆◆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BBB 등 6명)가 위원회와는 무관하게⁹⁾ 개별 출자하여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 운영위원회 당시(담당자 LLL은 위법시설인지 몰라 아무런 조치를

9) ●●과에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 운영위원회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글램핑사업을 추진한 당시 사무장 BBB의 주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그 중 6명이 참가하여 해당 동수별로 투자하였다고 주장

못했다고 주장하며, 담당자 PPP는 당초부터 있는 시설로 알고 있어 아무런 조치를 못했다고 주장함)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개별 출자하여 설치한 것으로 조사된 이후에는 철거 명령을 하는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 운영위원회와 개인에 대하여 공정하지 않게 처리하였다.

다.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미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111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시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7. 7. 28. ○○○○ 캠핑장·글램핑장 개장식 현장확인을 한 때와 2017. 12. 12. ○○○○ 캠핑장·글램핑장의 글램핑장 매입 요구에 대하여 ●●과-32485호(2017. 12. 27)로 회시할 때, 2018. 5. 15. 이후 2018. 6. 5. 기간 중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점검 할 때 등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2017. 7. 28. ○○○○ 캠핑장·글램핑장 개장식 현장확인을 한 때와 2017. 12. 12. ○○○○ 캠핑장·글램핑장의 글램핑장 매입요구에 대하여 ●●과-32485호(2017. 12. 27)로 회시할 때, 2018. 5. 15. 이후 2018. 6. 5. 기간 중 농산어촌개발사업 현장점검 할 때, 2018. 7. 28. ○○○○ 캠핑장내 글램핑 시설의 안전사고 발생한 때부터 2021. 5. 24. 감사일 현재까지 ◎◎면 ◇◇리 ㄱ번지 소재 ○○○○ 캠핑장 공유재산 내 시장이외에는 축조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이 건축신고 없이 축조 되어 있음에도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 캠핑장 사용료 불법 징수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08. 1. 10. 사업대상지 확정 이후 2015. 12. 20.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준공과 함께 조성된 ○○○○ 캠핑장은 공공이 이용하는 자동차 캠핑장 시설로서 영천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고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도 조례를 정하지 않고 2016. 11. 8. ◆◆◆◆◆ 운영위원회에 무상 위탁관리하여 조례로 정하지 않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사용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내용도 없이 ◆◆◆◆◆ 운영위원회에서 2017. 7. 28. ○○○○ 캠핑장 개장과 함께 사용료를 징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 캠핑장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영천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기관경고)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③ 관련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승진예정 직급 조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승진예정 직급 조정 부적정

영천시 ○○과에서는 2018.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 승진후속 등 결원에 대하여 승진대상 직급을 인사위원회에 조정요구하고 인사위원회의에서 조정된 승진대상 직급의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의결 요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며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 배수의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고,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급 또는 4개 이하의 여러 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8. 1. 1.부터 2021. 3. 26.까지 퇴직 및 명예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 147회의 결원에 대한 승진예정 직급을 결정하며 단수정원 또는 복수정원이 없어 조정할 수 없는 직급에 대하여는 승진예정 직급을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 1.부터 2021. 3. 26.까지 인사요인 및 기준 발표까지 19회에 걸쳐 147개의 직렬을 직렬조정하며 영천시●●●●●●●●과 직원들로부터 직렬간의 승진 형평성,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요구 받아 왔다는 이유로 조정할 수 없는 승진예정 직급 22개를 인사위원회에 조정 요구하여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승진예정 직급을 아래 [표 1]과 같이 조정 하였다.

[표 1] 단수직급 및 복수직급이 없는 정원 승진예정 직급 조정 현황

승진심사일	승진임용직급	결원발생			승진의결자	
		사유	직급	성명	직급	성명
2018.02.27	○○7	승진후속	□□7	-	○○8	-
2018.05.10	◇◇7	승진후속	■ ■7	-	◇◇8	-
2018.05.10	◇◇7	승진후속	□□7	-	◇◇8	-
2018.07.12	◆◆8	승진후속	△△△△8	-	◆◆9	-
2018.07.12	□□8	승진후속	▲▲▲▲8	-	□□9	-
2018.12.26	◆◆8	승진후속	◇◇8	-	◆◆9	-
2018.12.26	□□8	정년퇴직	▽▽▽▽▽8	-	□□9	-
2019.05.30	▼▼6	승진후속	◁◁6	CA	▼▼7	CB
2019.05.30	◀◀◀◀6	명예퇴직	▷▷6	-	◀◀◀◀7	-
2019.05.30	○○7	승진후속	◀◀◀◀7	-	○○8	-
2019.05.30	□□8	승진후속	○○8	-	□□9	-
2019.08.29	◎◎7	승진후속	◆◆7	-	◎◎8	-
2019.12.26	□□6	정년퇴직	▶▶▶▶6	-	□□7	-
2019.12.26	♠♠♠♠6	정년퇴직	♠♠♠♠6	-	♠♠♠♠7	-
2020.02.19	◆◆6	장기교육	□□6	-	◆◆7	-
2020.02.19	♡♡♡♡7	승진후속	♠♠♠♠7	-	♡♡♡♡8	-
2020.10.30	♥♥♥♥7	승진후속	▷▷7	-	♥♥♥♥8	-
2020.10.30	▷▷8	승진후속	♥♥♥♥8	-	▷▷9	-
2020.12.29	■ ■6	승진후속	◆◆6	-	■ ■7	-
2020.12.29	▲▲▲▲6	승진후속	◁◁6	-	▲▲▲▲7	-
2020.12.29	♡♡♡♡8	정년퇴직	▲▲▲▲8	-	♡♡♡♡9	-
2021.02.25	○○8	승진후속	□□8	-	○○9	-

그 결과 2019. 5. 30. ◁◁6급 CA의 승진후속 결원에 승진할 수 없는 ▼▼7급 CB를 승진시키는 등 6급 7명, 7급 7명, 8급 8명을 승진할 수 없는 22명이 [표 1]과 같이 승진하였고 조정 전 하위계급에서 승진하여야 할 22명이 승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지정대리 운영 부적정

영천시 ○○과에서는 ㉠㉠㉠㉠㉠장, ㉡㉡㉡㉡㉡장, ㉢㉢㉢㉢㉢장, ㉣㉣㉣장의 결원을 바로 하급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영천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하며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며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9. 1. 1. 지방서기관 A, B, C의 공로연수로 2019. 7. 1. 지방서기관 D의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에 대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하며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2019. 1. 1. 지방서기관 A ㉠㉠㉠㉠㉠장, 지방서기관 B ㉡㉡㉡㉡㉡장의 공로연수 및 지방서기관 Q(㉣㉣㉣장 직무대리) 승진으로 인한 결원에 지방<<사무관 L, 지방■□사무관 M, 지방■□사무관 N을 승진후보자명부에 승진임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음에도 4급 승진 소요연수 도래자가 없어 시정운영의 안정과 국·소장 직위의 업무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4급(국·소장급) 직위에 예외적으로 지방<<사무관 L을 ㉠㉠㉠㉠㉠장 직무대리로, 지방■□사무관 M을 ㉡㉡㉡㉡㉡장 직무대리로, 지방■□사무관 N을 ㉣㉣㉣장 직무대리로 각각 지정하였고,

2019. 7. 1. 지방서기관 D ㉢㉢㉢㉢㉢장의 공로연수로 인한 결원에 지방<<사무관 E를 승진후보자명부에 승진임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없음에도 시정운영 안정과 국장 직위 업무공백 최소화 등 2019. 1. 1. 직무대리와 같은 사유로 지방<<사무관 E를 ㉢㉢㉢㉢㉢장 직무대리로 잘못 지정하였다.

3.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 소홀

영천시 ○○과에서는 2018. 1. 1.부터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자격증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승진임용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 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및 「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3조의3, 제25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천시 인사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 하는 특수직급(●●●●, ■■, ●●, ○○, ■■, ■■■, ■■■■, ◇◇, △△△△, ■■■■■■■■)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은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표 2]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잘못 작성된 현황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	잘못 작성한 경우					적정하게 작성한 경우			
	승진예정직급	성명	총점	가산점	명부 순위	성명	총점	가산점	명부 순위
2019. 05. 31.	지방●●●●6급	F	85.15	0.5	11	F	84.65	0	12
		J	84.98	0	12	J	84.98	0	11
2019. 11. 30.	지방●●●●7급	G	89.02	0.5	1	G	88.52	0	2
		K	88.60	0	2	K	88.60	0	1
		H	77.38	0.5	5	H	76.88	0	6
		P	76.92	0	6	P	76.92	0	5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2018. 1. 1.부터 2021. 5. 27. 감사일 현재까지 승진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 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을 가산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 1.부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표 2]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지방●●●●주사 F, 지방●●●●주사보 G, 지방●●●●주사보 H에게 0.5점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작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12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징수하며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6. 1. 기준으로 2020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207건 5,419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2020년도 미부과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5,419천 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미이행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협의 업무를 4,450건을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1의2호 다목에 따르면 영천시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시·군 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 제21호의 동식물 관련 시설 중 660㎡ 이내의 창고 건축물의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용 창고 건립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 관련 협의 요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게 협의를 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창고건물의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660㎡가 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의 ◎◎용 창고건립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협의 요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협의 통보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하여 협의를 통보하였다.

[표] 도시계획위원회 미개최 현황

연번	신청지		협의면적 (㎡)	협의목적	협의일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여부	비고
	읍면리동	지번					
1	-	-	722	◎◎용 창고 건립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2018.07.19.	부	
2	-	-	687	"	2019.01.21.	부	
3	-	-	985	"	2019.03.26.	부	
4	-	-	833	"	2019.07.18.	부	
5	-	-	949	"	2020.03.18.	부	

이로 인해 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여 개발행위허가 협의가 통보되었으며, ◎◎용 창고 건립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협의 대상과는 다르게 형평성을 저해하여 개발행위 협의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발급 및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12개 읍·면·동
내 용	

영천시 12개 읍·면·동에서는 「농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접수하고 취득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 읍·면·동 및 ○○○○과에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농업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이하 “예규”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되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예규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전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의 범위¹⁰⁾(이하 “사업범위”라 한다)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시장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농업법인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심사 확인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개 면·동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농업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상에서 “태양광 전기발전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 해산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관련서류 심사 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상기 농업법인 등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 7개 농업법인 등이 농지 7필지 7,839㎡를 위법하게 소유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표 1] 농업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내역

연번	발급기관	발급일자	법인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고
				소재지	면적(㎡)		
합계	6개 면동		7개	7필지	7,839㎡		
1	●●동	2018-11-19	-	-	285	태양광전기발전업 및 물류보관업 등	
2	◎◎면	2019-11-04	-	-	2,559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10) ① 영농조합법인 :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농업회사법인 :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연번	발급기관	발급일자	법인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고
				소재지	면적(㎡)		
3	◇◇면	2019-03-08	-	-	2,015	온라인정보제공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4	◆◆동	2018-02-01	-	-	876	부동산임대업	사업범위 삭제 (2020.08.11.)
5	□□면	2018-06-21	-	-	1,015	부동산중개업 및 주차장업, 창고업 등	
6	■□면	2019-05-17	-	-	224	태양광전기발전업 및 물류보관업 등	사업범위 일부 삭제 (2019.03.21.)
7	◇◇면	2018-01-29	-	-	865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 개발업 등	해산 (2021.03.03.)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예규 제8조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과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확인하여 농지소유 기준에 맞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읍·면·동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1,000㎡를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농지소유 기준에 대한 심사 없이 16건을 발급하였으며, 기존 취득 농지면적의 확인 없이 세대원(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1,000㎡를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23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총 39명이 57,556㎡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위법하게 소유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표 2]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내역

(단위 : 명, ㎡)

연번	발급기관	발급일자	신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부적정 내역	비고
				읍면	지번	면적(㎡)		
합계	10개 읍면동		39명	73필지		57,556㎡		
1	□□면	2020-05-20	-	-	-	1,680	신청시 1,000㎡ 초과	
2	▽▽면	2019-10-11	-	-	-	1,131		
3	◎◎면	2018-05-29	-	-	-	1,957		
4	◇◇면	2021-01-14	-	-	-	1,088		
5	■ ■면	2018-04-05	-	-	-	1,068		
6	▼▼면	2020-07-14	-	-	-	1,736		
7	▼▼면	2020-07-13	-	-	-	1,281		
8	▼▼면	2020-06-26	-	-	-	1,332		
9	▼▼면	2020-06-23	-	-	-	2,344		
10	▼▼면	2020-06-16	-	-	-	1,673		
11	▼▼면	2020-04-02	-	-	-	2,965		
12	◁◁면	2020-09-17	-	-	-	2,860		
13	◁◁면	2020-07-06	-	-	-	1,534		
14	◁◁면	2020-05-11	-	-	-	1,544		
15	◁◁면	2019-12-03	-	-	-	1,028		
16	◁◁면	2019-11-26	-	-	-	1,167		
17	◀◀읍	2018-07-18	-	-	-	1,063	세대원(개인)이 취득하는 총면적 1,000㎡ 초과	
18	■ ■면	2018-01-31	-	-	-	1,016		
19	□□면	2020-05-07	-	-	-	1,269		
20	▼▼면	2018-11-01	-	-	-	1,456		
21	◁◁면	2018-09-03	-	-	-	1,152		

연번	발급기관	발급일자	신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부적정 내역	비고
				읍면	지번	면적(㎡)		
22	○○면	2020-09-23	-	-	-	1,091	세대원(개인)이 취득하는 총면적 1,000㎡ 초과	
23	▼▼면	2020-07-13	-	-	-	1,983		
24	■ ■면	2020-11-13	-	-	-	1,309		
25	■ ■면	2018-04-05	-	-	-	2,312		
26	○○면	2018-06-14	-	-	-	1,412		
27	○○면	2018-05-29	-	-	-	2,057		
28	■ ■면	2018-07-18	-	-	-	1,063		
29	■ ■면	2018-01-31	-	-	-	1,016		
30	□ □면	2020-04-24	-	-	-	1,604		
31	▼▼면	2020-11-25	-	-	-	1,214		
32	▼▼면	2020-06-25	-	-	-	1,610		
33	□ □면	2020-04-07	-	-	-	1,079		
34	▼▼면	2019-06-07	-	-	-	1,510		
35	□ □면	2020-06-03	-	-	-	1,022		
36	▷▷동	2018-04-30	-	-	-	1,527		
37	◁◁면	2018-09-03	-	-	-	1,152		
38	▶▶면	2018-06-28	-	-	-	1,213		
39	○○면	2020-06-10	-	-	-	1,038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3.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한 농지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예규 제4조 제4호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 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예규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예규 제8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읍면장은 신청인이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 등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읍·면에서는 농업인등이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을 한 농지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인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농지의 경우에는 검토를 거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런데 4개 읍·면 및 ○○○○과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제외되는 농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7필지에 787,490원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3] 농지전용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부적정 공익직불금 지급내역

(단위 : 명, m²)

연번	발급기관	농지전용일자	신청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내역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내역	향후 계획
				일자	읍면	지번	면적(m ²)		
합계	4개 읍면		6명		7필지		11,046m ²	787,490원	
1	◀◀읍	2018.05.21	-	2019.01.22	-	-	1,490	285,860	환수
2	■■■면	2019.07.24	-	2019.09.25	-	-	3,616	12,270	환수
3		2020.08.28	-	2020.11.06	-	-	2,260	302,840	환수
4		2018.07.16	-	2018.09.06	-	-	323	15,450	환수
5		2018.07.16	-	2018.09.06	-	-	509	24,340	환수
6	◁◁면	2018.05.16	-	2018.10.19	-	-	698	33,390	환수
7	◎◎면	2019.06.17	-	2019.08.29	-	-	2,150	113,340	환수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지급 제외 농지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787,490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국외여행 식비 미반환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영천시 ○○○○○에서는 영천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9. 7. 21. ~ 2019. 8. 12. ○○○○○○ ■■■■■ 레지던스에서 어학연수 업체인 ●●●를 통하여 “2019년 ◇◇◇◇&○○○○○○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 지방◆◆주사보 R은 “2019년 ◇◇◇◇&○○○○○○ 해외어학연수”의 담당자로서 학생 인솔을 목적으로 2019. 7. 21. ~ 2019. 7. 26.(5박 6일)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하여 2019. 7. 11. ○○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아래 [표 1]과 같이 여행경비 1,416,080원을 수령하였다.

[표 1] 여행경비 수령 현황

(단위 : 원)

직 급	성 명	수 령 액					
		계	항공운임	체재비			준비금
				일 비	숙박비	식 비	
◆◆7급	R	1,416,080	640,200	185,640	366,520	223,720	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¹¹⁾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따라서 위 사람은 “2019년도 초중학생 ◇◇◇◇&○○○○○○ 해외어학 연수”의 담당자로서 해외어학 연수 직무와 관련하여 ●●●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식사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감사기간 중 “2019년도 초중학생 ◇◇◇◇&○○○○○○ 해외어학 연수”의 학생 인솔을 위해 2019. 7. 21. ~ 2019. 7. 26. ○○○○○○ 및 ◇◇◇◇◇ 지역에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2019. 7. 21. 경 ○○○○○○ 현지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지불하기 위해 금액미상의 현금을 ●●●에 지급하였으나 ●●●가 금액미상의 현금을 위 사람에게 되돌려주자 이를 수령¹²⁾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21. 5. 11. ~ 2021. 5. 28. 감사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을 확인¹³⁾ 하였으나 2021. 6. 24. 위 사람은 “진술서”를 통하여 2019. 7. 21. ~ 2019. 7. 26. “2019년도 초중학생 ◇◇◇◇&○○○○○○ 해외어학 연수”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S ●●● 대표에게 전달하였고, S 대표가 숙박비와 식비를 계산하고 잔액을 되돌려 주었다는 의견¹⁴⁾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지방◆◆주사 R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는 등 적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2) 돌려받은 금액은 아이스크림 및 음료수를 3회에 걸쳐 구입(200,000원 상당)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의견제출

13) 2021. 5. 28. 및 2021. 6. 10. 문답, 2021. 5. 28. 경위서, 2021. 6. 4. ●●●에서 작성한 상황확인서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

14) 2021. 6. 24. 위 사람은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2021. 6. 22. ●●●에서 작성한 “상황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진술서”와 같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영천시 ●●면 ◎◎리 ㄱ 외 12필지에 ◇◇◇◇ 외 4개 업체의 공장설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협의)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부지 면적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변경허가 하였다.

[표] 영천시 ●●면 ◎◎리 공장설립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내역

연번	업체명 (대표)	사업부지	최초 허가	변경 (1)	변경 (2)	변경 (3)	변경 (4)	사업기간
1	◇◇◇◇ (A→B)	●●면 ◎◎리 ㄱ, ㄴ ㄷ, ㄹ ㅁ, ㅂ	2014. 11. 24.	2015. 11. 26.	2016. 11. 25.	2017. 7. 4.	2018. 12. 14.	2014. 11. 20. ~ 2019. 12. 31.
2	◆◆◆◆ (C)	●●면 ◎◎리 ㅅ, ㅈ ㅊ, ㅋ ㄴ, ㄷ	2014. 11. 24.	2015. 11. 26.	2016. 11. 25.	2017. 7. 4.	2018. 12. 14.	
3	□□□□ (D) →■■■■■■■■ (E) →△△△△△ (E)	●●면 ◎◎리 ㅋ, ㅌ, ㅍ ㅈ, ㅊ, ㅎ ㄷ, ㄹ ㅁ, ㅂ	2014. 11. 24.	2015. 11. 26.	2016. 11. 25.	2017. 7. 4.	2018. 12. 17.	
4	▲▲▲▲ (F)	ㄴ ㄷ	2014. 11. 21.	2015. 11. 26.	2016. 11. 25.	2017. 7. 4.	2018. 12. 17.	
5	▽▽ (G)	ㄷ	2014. 11. 21.	2015. 11. 26.	2016. 11. 25.	2017. 7. 4.	2018. 12.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인·허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있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2. 14. 및 2018. 12. 17. ◇◇◇◇ 외 4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14. 11. 20. ~ 2019. 12. 31.로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하고, 2019. 12. 31.까지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채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5. 27.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의 기간을 연장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법인카드 관리 소홀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 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영천시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시행 2021. 1. 5.) 제6조 제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사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가맹점 업종이 유흥기타로 되어 있는 ●●●●●● 외 1개소에서 법인카드로 217,500원을 결제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으며,

[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내역

카드번호	승인일자	승인시각	승인금액	상호명	업종	비고
-	2018. 12. 6.	20:26:25	100,000	●●●●●●	유흥기타	
-	2019. 2. 21.	20:27:18	72,000	●●●●●●	유흥기타	
-	2020. 1. 20.	22:21:45	45,500	○○○○○ ○○○○	유흥기타	

2021. 2. 5. “설 명절 직원 격려”를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온누리 상품권 59매를 구매하여 ○○○○○ 소속 직원 19명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에서 사용 중인 법인카드 11개 모두 클린카드로 발급받지 않는 등 법인카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유흥기타업종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217,500원은 환수하시고, ○○○○○ 법인카드를 클린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각종 공공기관 홍보영상 제작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각종 공공기관 홍보 영상 제작에 대하여는 그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 조회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직접생산능력이 없는 사업자와 아래 [표]와 같이 6건 86,315천 원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소지 업체 계약 내역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 원)	비고
합 계			86,315	
■■■ ■■ ■■■■■■■■ 영상 제작	(주)●●●●	2018. 10. 16.	14,080	
△△△△ 동영상 제작	(주)○○○○○○○○○○	2018. 11. 20.	14,960	
▲▲▲ ▲▲▲▲▲ ▲▲ ▲▲ ▲▲ ▲▲▲ 영상 제작 용역	◇◇◇ ◇◇◇◇	2019. 10. 28.	17,475	
▽▽▽ ▽▽▽▽ 동영상 제작	(주)○○○○○○○○○○	2019. 11. 25.	11,000	
▼▼▼▼▼ ▼▼▼▼ ▼▼▼▼ ▼▼▼▼▼ ▼▼ 영상 제작	◆◆◆ ◆◆◆◆	2020. 2. 21.	11,000	
▄▄▄▄▄▄▄▄▄▄▄▄▄▄ ▄▄ 영상 제작	□□□ □□	2021. 3. 16.	17,800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 입찰 실적제한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각종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¹⁵⁾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1억 원 이상인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5)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 1천만 원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추정가격이 2.1억 원 미만인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 ●●●● ●●●● ●●●●” 입찰 공고 시, 아래 [표]와 같이 추정가격이 2.1억 원 미만임에도 입찰공고문의 “입찰 참가자격”에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서버가상화, 데스크탑가상화 구축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기재하여 관련 실적이 없는 업체의 입찰은 사실상 제한되었으며, 그 결과 2개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¹⁶⁾하게 되었다.

[표] “●●●● ●●●● ●●●● ●●●● ●●●●” 입찰공고 및 개찰 현황

(단위 : 천 원)

입찰공고일	기초금액	추정가격	개찰 결과	계약체결일	비고
2020. 11. 19.	178,500	162,272	(1순위) 주식회사 ○○○○○○	2020. 11. 26.	적격심사 후 계약체결
			(2순위) 주식회사 ◇◇◇◇◇◇	-	-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6) 2021. 5. 25. 나라장터 확인 결과, 해당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경북도내 업체”는 108개인 것으로 확인됨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부근 공영(노상)주차장 위탁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영천시 관내 주차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8조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영천시 주차장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료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입찰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 ○○○○과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아래 [표 1]과 같이 ●●●●●●● 부근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 부근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체결 현황

구 분	관리수탁자	계약금액(천 원)	위수탁기간	위탁면수	비고
○○○○ 구간	T	76,000	2021. 4. 1. ~ 2024. 3. 31.	50면(600㎡)	개인
◇◇◇ 구간	U	25,700	"	30면(360㎡)	"

영천시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주차장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영천시 주차장 조례」, 공고문 내용 및 본 계약을 준수·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위탁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거나 위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 13조에 따르면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천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 법규와 “(본 건 위·수탁) 입찰 공고문” 등을 준용하며 “위탁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위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질서 확립과 이용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각종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수탁자”에게 아래 [표 2]와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표 2] 제재 조치

유형/벌칙	제1차	제2차	제3차
주차요금 초과 및 부당 징수, 신용카드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정	경고	위약금 부과 또는 계약 직권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귀속
주차구획선 외에 요금 징수 등 주차질서 문란	"	"	"
주차장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및 상행위 등 주차구획 훼손	"	"	"
친절·공정 의무 위반	"	"	"
기타 지시사항 위반 등	"	"	"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수탁자”가 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했고, 각종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그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하여야 했다.

1. 주차요금 과다 징수 관련

계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아래 [표 3]과 같이 「영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주차요금 등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영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급지구분	1회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	주간	야간
1급지	500원	75,000원	56,000원
2급지	200원	30,000원	22,000원

※ 1급지: 동지역 / 2급지: 읍면지역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수탁자가 조례와 계약서에 따라 1회 주차시 30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동지역에 해당)을 징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했고, 영천시의 사전승인 없이 주차요금을 변경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 결과, 주차권에는 “1,000원(1시간당), 30분 초과시 500원 추가”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주차 즉시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수탁자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으며, 영천시 ○○○○과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주차권 일련번호 미기재 및 자체 검인 날인 누락 관련

계약서 제8조 제9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주차권을 종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반드시 자체 검인을 날인한 다음 수불대장에 의거하여 수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자체 검인이 날인된 주차권이 대장에 의거하여 수불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현지확인 결과, 주차관리원이 배부하는 주차권에는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검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일일 주차권 발행수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수입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았다.

3.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관련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주차표를 교부하고 「영천시 주차장 조례」 [별지 2호]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입찰공고문 “기타사항”에 따르면 관리수탁자의 비용부담으로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객의 요구 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수탁자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고객의 요구 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한편 영천시 ○○○○과에서는 2021. 4. 14. 업무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주차관리원이 카드단말기 조작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주변에 대기 중인 관리수탁자가 이를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것과 주차관리원이 영수증 출력이 되지 않는 기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출력이 되는 기기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주차관리원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거나,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여전히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주차관리원 급여 지급 관련

계약서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종업원에 대한 소정의 급여를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에 대한 친절과 봉사를 다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수탁자가 주차관리원에게 매달 일정량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업무담당자를 통해 급여지급 내역을 요청한 결과, 수탁자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급여를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영천시 ○○○○과에서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등 급여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이 위탁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기업 투자의 효율적인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천소재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투자유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르면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로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유치 조례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한편 영천시에서는 2020. 2. 11. ㉠㉡㉢ 특별지시사항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분야별 대응계획 제출을 전 부서에 지시하였으며, 이에 ○○○○과에서는 2020. 3. 6.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기준 완화, 중소기업 운전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지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대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서단위 대응계획을 제출하였고, 2020. 3. 11.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한 신청대상 기준완화,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방식 변경, 사후관리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기준 완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3. 11.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기준 완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유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대상 기준을 조례 개정 없이 집행부의 내부 결재만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하여 20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운영하였다.

이로 인해 (주)●●●● 등 3개 기업은 투자금액 20억 원 미만 등으로 투자유치 조례에서 정한 신청대상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2]과 같이 총 197백만 원의 보조금이 2020. 9. 21. 지원 결정되어, ●●●●과 ○○○○○○은 이미 보조금이 지급완료 되었으며 ◇◇◇◇◇은 현재 투자 진행 중으로 투자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표 1] 투자유치 지원기금 신청대상 기준 완화 내용

항 목 별	조 례	완화계획	비 고
관내 제조업 영위 기간	3년	2년	
신규투자 금액	20억 이상	10억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10명 이상	변경 없음

[표 2] 완화기간 투자유치 지원기금 지원(총 6개 업체) 중 조례기준 미달 업체 현황

업체명	설립일자	투자금액 (백만원)	고용인원 (명)	신청일자	심의일자	지원금 (천원)	보조금 교부일자
합 계		3,945	66			197,250	
◇◇◇◇◇	17.09.13.	1,600	35	20.04.28.	20.09.21.	80,000	지급 예정
●●●●●	16.12.22.	1,100	6	20.05.04.	"	55,000	21.2.4.
○○○○○○○	14.06.25.	1,245	25	20.09.02.	"	62,250	21.3.19.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기관 대행사업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관내 □□□□의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실질적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는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써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7조, 제8조, 제15조에 따르면 “●●●●●●●●●●●●●●”은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는 “●●●●●●●●●●●●●●”이 소속된 기관의 정관 등에 따라 사업비의 간접비 등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징수요율은 “시”와 “●●●●●●●●●●●●●●”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 시행 중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와 “●●●●●●●●●●●●●●”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실행한 공기관 대행 사업이 당초 계획된 사업량 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수수료를 일정 부분 감액 정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과에서는 “○○○○○○○○○○○○○○○○○○○○○○○○○○○○사업”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로 편성하여 ●●●●●●●●●●●●●●과 매년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일정 요율(2020년 5%, 2019년 7%, 2018년 8%)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런데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위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매년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량이 현저하게 감소(실적률 10%, 34%, 71%)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행 수수료에 대한 감액 정산 조치 없이 대행 수수료 전액을 그대로 정산 확정하는 등 아래 [표 2]와 같이 대략 38백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1] 사업 추진 현황

연도별	사 업 비(천 원)				사 업 량(연 인원)			비고
	총 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당초 계획	실 적	실적률	
계	1,170,000	610,001	559,999		3,650	1,947		
2020	600,000	420,160	179,840	70%	2,000	1,424	71%	
2019	500,000	181,813	318,187	36%	1,500	509	34%	
2018	70,000	8,028	61,972	11%	150	14	10%	

[표 2] 대행 수수료 관련 현황

연도별	사업비 세부 내역(천 원)				수수료 요율		수수료 제외 집행액 (B)	변경 수수료 (A*B)	수수료 증감
	총 액	실 행 사업비	운영비	수수료	총액 대비	수수료 제외 (A)			
계	1,170,000			70,600			539,401	31,796	△38,804
2020	600,000	550,000	20,000	30,000	5%	5.3%	390,160	20,535	△9,465
2019	500,000	450,000	15,000	35,000	7%	7.5%	146,813	11,050	△23,950
2018	70,000	63,000	1,400	5,600	8%	8.7%	2,428	211	△5,389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집행에 따른 대행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수탁기관의 대행 수수료 사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방법을 명시하여 이와 같이 부당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보조사업 이월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실, ●●●●과, ◎◎◎◎과, ◇◇◇◇과,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제5장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따르면 사고이월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하며,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 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 하는 것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부득이 당초 보조결정된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승인을 먼저 받은 후 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아래 [표]와 같이 영천시 ●●●●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한 “□□□□ □□□□” 등 15개 사업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확정되고, 또한 당초 보조사업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보조사업 기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실에서는 사업별 기간 변경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이월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표] 보조금 이월 확정 이후 변경승인 내역

부서별	개수	이월 사업비(천 원)			비 고
		계	도 비	시 비	
계	15	3,649,607	1,626,412	1,263,291	
●●●●과	1	500,000	290,000	210,000	
○○○○○과	3	1,016,000	629,900	303,100	
◇◇◇◇과	10	2,116,807	702,732	737,171	
◆◆과	1	16,800	3,780	13,020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실에서는 보조사업 이월에 대한 자체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임제공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1. 환전행위 위반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행정처분 지연 처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체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해당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환전행위를 한 게임제공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적기에 처리하여야 했다.

한편 ○○○○과에서는 2020. 5. 12. 영천경찰서로부터 ●●●●●(대표 V)의 환전행위에 대한 불법 게임장 적발 통보를 받고 4개월이 지난 2020. 9. 18. 업체 대표의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에서 업체대표가 제시한 “재판결과까지 행정처분 보류” 의견을 받아들여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보류하였으며, 2021. 4. 28. 업체대표의 행정처분 동의 의견서를 접수하고, 영천경찰서 적발통보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2021. 5. 17.에서야 ●●●●●에 대한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의 환전행위에 대해 영천경찰서로부터 적발 통보 공문을 받고 아래 [표 1]과 같이 1개월 내외로 청문을 실시한 평소와 달리

4개월이 지나서야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평소 1~6개월 정도 소요된 행정처분과 달리 ●●●●●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에 대한 1심 재판이 2020. 11. 10. 선고되었음에도 6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행정처분 하는 등 특정업체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을 평소와 달리 지연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의 허가취소 처분이 최소 6개월에서 가장 11개월 정도 지연 처리되어 그 기간 동안 ●●●●●는 영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1] 2018년 ~ 2021년 “환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업체명	적발 통보 일자(경찰서)	청 문		행정처분		비 고
		일 자	소요일수	일 자	소요일수	
●●●●●	20.05.12	20.09.18	4개월 6일	21.05.17	12개월 5일	사법처리까지 보류 요구
○○○○○	19.03.19.	19.04.30	1개월 11일	19.09.24	6개월 5일	사법처리까지 보류 요구
◇◇◇◇◇ ◇◇◇◇◇	19.01.17	19.02.12	26일	19.02.12	26일	
◆◆◆◆◆ ◆◆◆◆◆	18.11.09	18.11.30	21일	18.12.11	1개월 2일	사법처리까지 보류 요구
□□□□□	18.09.10	18.11.03	1개월 23일	18.11.08	1개월 28일	공시송달 공고

2. 특정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미 처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일반게임 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이하 “자동게임 진행장치”라 한다)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자동게임 진행장치 사용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처리하여야 했다.

한편 ○○○○과에서는 2020. 5. 12. 영천경찰서로부터 ●●●●●(대표 V)의 환전행위에 대한 불법 게임장 적발 통보를 받았으며, 2020. 9. 1. 영천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아래 [표 2]과 같이 ●●●●● 등 3개 업체의 자동게임장치 사용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2021. 5. 17. 환전행위(2020. 5. 12. 적발)에 대해 ●●●●●를 허가취소 행정처분 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9. 1. 영천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 ■■■■■, △△△△△△△ 등 3개 업체의 자동게임장치 사용 위반을 적발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과 △△△△△△△ 2개 업체는 2020. 9. 17.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는 이전에 적발된 허가취소 처분과 병합 처리를 이유로 같은 날 처분하지 않았으며, 또한 ●●●●●의 허가취소 처분일(2021. 5. 17.) 전까지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관련법령을 위반해 자동게임 진행장치를 사용한 ●●●●●가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2] 2020. 9월 게임제공업소 합동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업체명	합동단속(시청+경찰서)		행정처분		비 고
	일 자	위반사항	일 자	처분내용	
●●●●●	2020. 9. 1	자동게임 진행장치 사용 위반	미 처분	미 처분	2021. 5. 17. 허가취소
■■■■■	"	"	2020. 9. 17	영업정지 30일	
△△△△△△△	"	"	2020. 9. 17	영업정지 30일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처분 미이행 및 소관부서 미통보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¹⁷⁾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및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 원, 담배판매자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17)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부 2018년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개선사항 모음¹⁸⁾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술·담배 판매를 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통보가 올 경우, 영업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법상의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하여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의 처분을 선행하고, 술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는 업소라면 식품위생법상의 처분내용에 따라 처분하며,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업형태의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발 통보 시에 담배사업법 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되는 업소라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업형태의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18) ●●●●부 ○○○○○○○○과-2377(2018. 7. 20.)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처분 미이행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9. 1. 28.부터 2020. 11. 17.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천경찰서로부터 통보된 4개 업소와 관련하여 20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처분 미조치 현황

업소명	위반일자	위반내용	경찰서 통보일자	비고
□□	미상	청소년 주류 판매 (종업원)	'19. 1. 28.	미처분
■ ■	'19. 4. 14.	청소년 주류 판매 (종업원)	'19. 5. 7.	미처분
△ △	미상	청소년 주류 판매 (종업원)	'20. 1. 28.	미처분
□□	'20. 10. 10.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 (종업원)	'20. 11. 17.	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소관부서 통보조치 미이행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2019. 8. 13.부터 2020. 11. 17.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천경찰서로부터 통보된 담배소매업소 4개소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과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표 2]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소관부서(◇◇◇◇◇과) 미통보 현황

업소명	위반일자	위반내용	경찰서 통보일자	비고
▲▲	미상	청소년 담배 판매 (종업원)	'19. 8. 13.	소관부서 미통보
▽▽	'20. 6. 15.	청소년 담배 판매	'20. 8. 6.	소관부서 미통보
▼▼	미상	청소년 담배 판매 (종업원)	'20. 10. 29.	소관부서 미통보
□□	'20. 10. 10.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 (종업원)	'20. 11. 17.	소관부서 미통보

아래 [표 3]과 같이 2020. 6. 25.부터 2020. 10. 27.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천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식품접객업소 2개소 및 숙박업소 1개소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과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소관부서(◆◆◆◆과) 미통보 현황

업소명	위반일자	위반내용	경찰서 통보일자	처분내용
◁◁	'20. 5. 6.	청소년 주류 판매	'20. 6. 25.	소관부서 미통보
◀◀	'20. 9. 18.	청소년 주류 판매 (종업원)	'20. 10. 16.	소관부서 미통보
▷▷	'20. 8. 9.	청소년 이성혼숙	'20. 10. 27.	소관부서 미통보

이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업주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비료관리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비료업자는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2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수입·보관·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시장은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자가 공정규격에 정해진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해당제품 회수·폐기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비료의 품질검사 중 단속검사는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수입·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로 되어 있으며,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으로부터 비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업체에 이를 통보하여 재검사 신청 등에 대해 고지하고 그에 따른 영업정지, 해당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0. 23. ●●●●●으로부터 영천시 소재의 비료 생산업체 (주)○○○○의 비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내역을 통보 받은 후, 이와 관련하여 2018. 10. 29. 해당업체에 부적합 내역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재검사 신청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아무런 처분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비료생산업체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표] 비료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내역

업체명	소재지	상표명	비료종류	생산일자	검사결과	비고
(주)○○○○	영천시 ◆◆면	◇◇◇◇	미량요소복합	'17. 1. 12.	농약성분검출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인·허가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부과금액, 납부기간 등에 관한 통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 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산지전용 신고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3조에 따라 임시특례법을 적용하여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던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4361호, 2016.12.2.)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 제1항19)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1.-마²⁰⁾.-10)에 따르면 「도로법」 등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등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불법 전용되어 전, 답, 과수원으로 사용되던 산지에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허가 기준에 따라 기존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타당하다.

19)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위해 신고된 2필지[영천시 ●●동 ㄱ번지(소유주 : Y), ◎◎면 ◇◇리 ㄴ번지(소유주 : Z)]가 산지전용허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 불법전용산지 양성화가 불가능한 2필지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기존도로 미확보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고 수리 현황

신청자	소재지	면적	불법이용기간	변경지목	수리통보일	비 고
Y	●●동 ㄱ	2,328㎡	8년 이상	전	18.7.23.	
Z	◎◎면 ◇◇리 ㄴ	754㎡	8년 이상	전	18.8.9.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유임야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시유임야인 ◎◎면 ◇◇리 ㄱ번지(現 ◎◎면 ㄴ번지)를 관리하면서 2018. 5. 24. ◆◆◆◆◆◆◆◆◆◆◆◆의 공장부지 사용을 위한 대부 신청을 허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 17. 대부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같은 해 4. 22. ◆◆◆◆◆◆◆◆◆◆◆◆과 공유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필지를 매각하였다.

[표] 영천시 ◎◎면 ◇◇리 ㄱ번지 대부 및 매각 현황

구 분	일 자	계약상대자	대 상 지	면적	대부목적 (매각사유)	비 고
대부	2018.5.24.	◆◆◆◆◆◆◆◆◆◆◆◆ ◆◆◆◆◆◆◆◆◆◆◆◆	◎◎면 ◇◇리 ㄱ	694㎡	공장 부지 조성	
대부(갱신)	2019.1.17.					
매각	2019.4.22.		◎◎면 ◇◇리 ㄴ 21)	804㎡ ²²⁾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 시유지 무단 형질변경에 대한 조치 없이 대부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21) 등록전환(◎◎면 ◇◇리 ㄱ번지 → ◇◇리 ㄴ번지)

22) 2018.12월 등록전환되면서 면적 변동

같은 법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 △△△△담당에서는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형질이 변경되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등의 조치를 무단 사용자에게 명령하여야 하고 시유지가 무단사용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된 이후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5. 1. ◆◆◆◆◆이 신청한 대부 계약 협의 토지가 영천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²³⁾되고 있었음에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 또는 원상회복 명령 없이 2018. 5. 24. ◆◆◆◆◆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없이 양성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시유임야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협의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23) 카카오맵 위성지도 상 2014년도의 지형과 2017년도 지형 비교 시, 2017년도에 기존에 식재된 수목이 벌채되어 있는 등 임야의 형질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있는 서류 1부를 구비하여야 하고 해당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19. 5. 23. 체결된 영천시 ○○과 ■■■■담당의 대부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 □□□□담당 및 ●●●●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 후 허가를 내어 주어야 하며, 허가 신청자인 ◆◆◆◆◆◆◆◆◆◆이 ◎◎면 ◇◇리 ㄱ번지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유임야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는지 확인하고 허가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담당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보완 조치하거나 허가를 반려하여야 타당하다.

그런데 ○○과 및 ●●●●과에서는 영천시 ◎◎면 ◇◇리 ㄱ번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였음에도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고발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의 ○○면 ◇◇리 ㄱ번지에 대하여 ○○과 △△△△ 담당으로부터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아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 조치하거나 허가를 반려하지 않고 2018. 5. 2. 개발행위허가 협의 통보하고 및 2018. 5. 25. 산지전용허가를 협의 통보하였다.

그 결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없이 양성화되었을 뿐 아니라 원상을 변경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허가를 내어 주게 되었다.

3. 대부재산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2019. 5. 23. 체결된 영천시 ○○과 ■■■■■담당의 대부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시유임야 담당 부서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상이 변경되었다면 원상회복 또는 계약해지하는 등 「공유재산법」 및 대부계약 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 △△△△담당에서는 ◆◆◆◆◆◆◆◆◆◆이 대부재산 원상변경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음에도 ◆◆◆◆◆◆◆◆◆◆의 「공유재산법」 및 대부 계약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9. 1. 15. 공장부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현장 출장복명하고 같은 해 1. 17. 대부계약을 갱신하였다.

4. 시유임야 매각 부적정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2조에 따르면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시유임야를 매각할 때에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인지 검토하고 공공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유임야를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에서 공장부지로 대부 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 ◇◇리 ㄱ번지를 대부허가 기간 중에 매각을 위하여 2018. 12. 11. “시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지적공부정리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과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였으며, 등록전환된 ㄱ번지(現 ㄴ번지)를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2019. 4. 22. 해당 필지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급·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주)●●●●에 시내 및 농어촌버스 14대에 대한 대폐차 보조금 21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1] 버스 대폐차 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

연도	보조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	비 고
합 계		14대	210,000,000원	
2018	2018년도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4대	60,000,000원	
2019	2019년도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5대	75,000,000원	
2020	2020년도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5대	75,000,000원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1.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IV.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③지방보조금 교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V.지방보조금의 수행-④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주)●●●●이 부득이 교부결정 전에 버스 구매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천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한 것은 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아야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주)●●●●에서 사전 승인 없이 버스 대폐차 구입 사업을 집행하고 영천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규정된 사전 승인 등 회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금액을 보조금으로 보전하였다.

[표 2]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 집행 현황

연도	사업명	교부결정일	교체차량	구매일 ²⁴⁾	보조금 (단위:천 원)	비 고
2018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2018.11.15.	△△△△	2018.1.25.	15,000	
			****	2018.3.2.	15,000	
			▲▲▲▲	2018.3.2.	15,000	
			****	2018.4.11.	15,000	
2019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2019.12.12.	****	2019.1.18.	15,000	
			****	2019.1.29.	15,000	
			****	2019.1.18.	15,000	
			****	2019.1.18.	15,000	
			****	2019.1.29.	15,000	
2020	시내 및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2020.10.12.	****	2020.9.25.	15,000	
			****	2020.7.21.	15,000	
			****	2020.2.13.	15,000	
			****	2020.2.13.	15,000	
			****	2020.2.13.	15,000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차령(차량 운행 연한)이 만료되지 않은 버스의 대폐차 보조금 지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낡은 차량을 대체(代替)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24) 교부신청서에 실 대금집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재

용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주)●●●●에서는 2018. 11. 12. 2018년도 시내버스 대·폐차에 따른 차량 구입 보조금 청구서에 “시내버스 차령 만료로 인하여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차량구입 지원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요건에 따르면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이 아닌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IV.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③지방보조금 교부에 따르면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주)●●●●에 시내버스 차량 대·폐차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지급 청구된 차량이 차령 만료로 인한 대·폐차 대상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교부 결정하지 않아야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1. 12. (주)●●●●에서 대·폐차 보조금을 신청한 4대의 차량 중 △△△△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결과 대·폐차 전 차량 신규 등록일이 2014. 8. 4.로 차령이 만료되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해당 차량 구입비에 대한 보조금 15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3.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²⁵⁾에 대하여 교부목적 외

용으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2018~2020년 영천시에서 버스 대폐차 보조금을 교부결정할 때,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내용과 처분 등에 있어서 영천시의 승인을 받도록 교부조건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버스에 영천시의 승인 없이 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중요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주)●●●●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천시의 승인 없이 3년간 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14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특히 2018년 대폐차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차량이 2021. 1. 28.자로 (주)◇◇◇◇에 매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버스 대폐차 보조금 지원차량 처분현황

연도	교체차량	처분 현황					
		저당권 설정				매각(명의이전)	
		종류	저당권자	설정일	채권가액	명의이전일	매각금액
2018	△△△△	단독저당	◆◆◆◆(주)	2018.2.1.	5천만 원	-	-
	****	단독저당	◆◆◆◆(주)	2018.3.12.	5천만 원	-	-
	▲▲▲▲	단독저당	-	2018.3.12.	-26)	2021.1.28. 매도 ²⁷⁾	17,000천 원
	****	단독저당	◆◆◆◆(주)	2018.4.18.	3천만 원	-	-
2019	****	단독저당	◆◆◆◆(주)	2019.1.30.	5천만 원	-	-
	****	단독저당	◆◆◆◆(주)	2019.1.30.	5천만 원	-	-
	****	단독저당	◆◆◆◆(주)	2019.1.30.	5천만 원	-	-
	****	단독저당	◆◆◆◆(주)	2019.1.30.	5천만 원	-	-
	****	단독저당	◆◆◆◆(주)	2019.1.30.	5천만 원	-	-

25) 부동산과 그 중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중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26) 명의 이전으로 저당권자 및 채권가액 표기되지 않음

27) 보조사업자와 대표자가 동일한 (주)◇◇◇◇으로 차량 이전 (매매금액 17,000천 원)

연도	교체차량	처분 현황					
		저당권 설정				매각(명의이전)	
		종류	저당권자	설정일	채권가액	명의이전일	매각금액
2020	****	단독저당	◆◆◆◆◆(주)	2020.10.6	5천만 원	-	-
	****	단독저당	◆◆◆◆◆(주)	2020.7.23.	5천만 원	-	-
	****	단독저당	◆◆◆◆◆(주)	2020.2.24.	5천만 원	-	-
	****	단독저당	◆◆◆◆◆(주)	2020.2.24.	5천만 원	-	-
	****	단독저당	◆◆◆◆◆(주)	2020.2.24.	5천만 원	-	-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미부과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 초과배출부과금 미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먼지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초과부과금은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로 산정하여 납부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확인하여 시료 채집, 분석결과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영천시 ●●면 소재 ○○○○○○○(주)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먼지,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민원에 따라 2020. 10. 15. 현장 확인 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3호(마모에 의한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방지시설을 방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 및 경고 조치를 하고 먼지 및 악취 시료를 포집하여 ◇◇◇◇◇◇◇◇◇◇에 분석 의뢰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먼지 97.47mg/Sm³(기준 30mg/Sm³ 이하)가 배출되었음에도 초과오염 물질에 대한 부과금(406,45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1] 초과부과금 산정명세

오염물질명	배출농도 (mg/Sm ³ , ppm.도)	기준농도 (mg/Sm ³ , ppm.도)	초과농도 (mg/Sm ³ , ppm.도)	일일유량 (m ³ /시간·일)	지역구분	부과기간 (시간 또는 일)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먼지	97.47	30	67.47	22,590	Ⅲ (계획관리지역)	9	1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체 초과배출부과금 미부과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총 질소(T-N), 총 인(T-P) 등 19종의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초과부과금은 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수질배출부과금 나. 초과부과금에 따르면 당초 개선명령 기간 내에 개선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그 개선이행 보고에 따른 오염도 검사 결과 동일 항목이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2차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1차 개선명령 이행 보고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한 후 ◇◇◇◇◇◇◇◇◇◇에 수질검사 의뢰 결과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2차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추가적으로 2차 부과금을 부과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8. 22. 녹조대비 배출시설 특별점검으로 영천시 ◆◆면 소재 (주)□□ ■■공장을 점검하여 [표 2] 점검 후 조치내역과 같이 1차 개선명령 이행 후 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표 3]과 같이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최초 초과배출에 대한 배출부과금만 부과하고 2차 배출부과금(578,98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점검 후 조치내역

일 자	조치내역	결 과
2018. 8. 23.	◇◇◇◇◇◇◇◇◇◇ 시료분석 의뢰	· BOD : 142.3mg/ℓ(기준 : 80mg/ℓ) · COD : 186.4mg/ℓ(기준 : 90mg/ℓ)
2018. 8. 30.	개선명령(1차) 통지	개선명령 이행('19. 2. 28.)
2019. 3. 5.	개선명령(1차)이행에 따른 현장확인 및 시료 분석 의뢰	· BOD : 143.7mg/ℓ(기준 : 80mg/ℓ) · COD : 129.7mg/ℓ(기준 : 90mg/ℓ)
2019. 3. 11.	개선명령(2차) 통지	개선명령 이행('19. 3. 10.)
2019. 3. 19.	개선명령(2차)이행에 따른 현장확인 및 시료 분석 의뢰	검사항목 적합 판정
2019. 3. 22.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유기물질(COD : 186.4mg/ℓ) 기준초과만 부과금 부과
2019. 3. 28.	개선명령 이행 완료 통보	

[표 3] 초과부과금 산정명세(2차)

오 염 물질명	배출농도 (mg/ℓ)	기준농도 (mg/ℓ)	초과농도 (mg/ℓ)	일일유량 (ℓ/일)	종류	지역구분	부과기간 (일)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유기물질 (BOD)	143.7	80	63.7	8,000	5종	‘가’지역	10	2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부과된 초과배출부담금 985천 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여부 확인 및 정기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지침」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등급별로²⁸⁾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관리등급의 조정을 통해 다음 연도 정기 점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의 설치 후 6개월 이내 최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 검사를 실시한 후 5년 · 10년 ·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 1회,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르면 토양오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8) 등급은 아래 기준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으로 나누고 각각 1회/2년, 1회/1년, 상하반기 각1회/1년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등급상향조정은 해당등급에 속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등급조정은 직상위 등급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가.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나.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다. 중점관리 :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사업장 및 시설, 토양오염사고 사업장 및 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 명령 불이행 사업장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등급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관리등급의 조정을 통해 다음 연도 정기 점검에 반영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여부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통합지도·점검으로 갈음하여 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토양오염도검사 대상 중 5개소는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소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과태료(각 1,000천 원)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구분(해당년도 말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계			167	147	146	
등급별	우 수		-	-	-	
	일 반		-	-	-	
	중 점		-	-	-	
시설별	석유류	주 유 소	120	103	103	
		산업시설	29	26	25	
		기 타	7	7	7	
	유 독 물		11	11	11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검사 기간 초과 과태료(100만 원) 미 부과 현황

대상명	완공일	최근검사일	검사기한 초과일
●●	2008. 4. 01.	2019. 12. 26.	545일
●●	2008. 4. 01.	2019. 12. 26.	453일
○○○	2009. 2. 05.	2019. 8. 30.	27일
◇◇	1993. 7. 09.	2020. 12. 15.	69일
◆◆	2003. 7. 14.	2020. 10. 14.	1일
□□	1992. 10. 12.	미 실시	
■ ■	1991. 12. 27.	미 실시	
△△	2010. 11. 29.	미 실시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토양오염도 지연검사 및 미검사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8,000천 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실적보고 관리 소홀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배출사업장, 처리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5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 지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은 년 2~4회,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년 1~2회 이상 우수·일반·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²⁹⁾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했다.

29) 1.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이상), 방치폐기물발생사업장 (우수관리 년 2회, 일반관리 년 3회, 중점관리 년 4회)
2. 200톤/년 미만 폐기물배출사업장(우수관리 년 1회, 일반관리 년 1회, 중점관리 년 2회)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점검 대상 사업장 대비 지도·점검 실적이 2018년 2%, 2019년 1%, 2020년에는 1%에 그치는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명세

(단위 : 업체 수)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점검대상	점검실시	점검대상	점검실시	점검대상	점검실시	
계		1,258	27	1,556	15	1,484	15	
사업장배출자신고		324	11	410	7	437	4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		878	4	1,085	0	985	6	
폐기물 처리업자	생활운반	3	3	3	3	3	3	
	건설운반	4	0	4	0	4	0	
	일반운반	30	2	37	2	38	1	
	건설중간	3	0	3	1	3	0	
	일반중간	16	7	14	2	14	1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폐기물 관련 사업장 실적보고 관리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폐기물 관련 사업자³⁰⁾ 등은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서를 제출³¹⁾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0)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한 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업장, 폐기물처리신고자

31) 올바른시스템 입력자료 또는 수기 실적보고서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폐기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이 신고 및 허가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제출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출을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총 67개 사업자가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련 사업장 실적보고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사업자 명세

제출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업종	대상	제출	위반	대상	제출	위반	대상	제출	위반
계	472	459	13	576	559	17	609	572	37
폐기물수집운반업	34	25	9	41	32	9	42	32	10
중간처리업	4	4	-	6	6	-	5	5	-
폐기물 재활용업	110	106	4	119	111	8	125	98	27
사업장폐기물	324	324	-	410	410	-	437	437	-
최종처리업	-	-	-	-	-	-	-	-	-
미제출 사업자	13개 사업장			17개 사업장			37개 사업장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붕위 전기(태양광)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지붕위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2018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05건을 허가하였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³²⁾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은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①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②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지역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되어 있다.

32) 인가 필요한 전기 발전사업 : 출력 10,000kw 이상의 발전소, 댐, 취수설비 등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305건의 지붕위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하였고, 허가 후 공사계획 신고 시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한 후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중 경미한 행위(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50㎡이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지역외 지역 150㎡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였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41건에 대해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하여 공사를 진행시켰다.

[표] 전기발전(태양광)사업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현황

연번	상 호	설치 면적	설비 용량	태양광발전 허가일	공사계획 신고수리일	개발행위 허가여부
1	-	530.00	53.46	18.01.15.	18.12.28.	부
2	-	1,404.00	144.54	18.01.15.	18.10.02.	부
3	-	1,483.00	99.00	18.01.15.	18.08.20.	부
4	-	1,519.00	137.94	18.01.15.	18.12.28.	부
5	-	415.00	65.52	18.02.27.	18.04.02.	부
6	-	566.00	97.92	18.03.16.	19.10.01.	부
7	-	612.00	97.20	18.02.26.	18.11.28.	부
8	-	630.00	74.88	18.03.05.	18.08.20.	부
9	-	821.96	97.92	18.03.29.	18.10.15.	부
10	-	3,418.00	97.92	18.03.29.	18.07.04.	부
11	-	486.00	84.00	18.04.25.	18.09.17.	부
12	-	3,171.14	198.90	18.05.09.	18.11.13.	부
13	-	610.40	99.00	18.05.10.	18.06.14.	부
14	-	610.40	99.00	18.05.10.	18.06.14.	부
15	-	593.60	99.00	18.05.10.	18.06.14.	부
16	-	92.00	16.56	18.05.24.	18.06.20.	부
17	-	554.66	98.55	18.05.24.	19.05.16.	부
18	-	5,489.40	486.00	18.06.15.	19.01.11.	부
19	-	573.00	69.58	18.06.18.	19.01.18.	부
20	-	164.90	25.20	18.06.19.	18.11.15.	부

연번	상 호	설치 면적	설비 용량	태양광발전 허가일	공사계획 신고수리일	개발행위 허가여부
21	-	504.00	63.36	18.06.28.	19.05.27.	부
22	-	621.54	98.55	18.07.11.	18.08.23.	부
23	-	1,685.00	299.30	18.07.16.	18.08.23.	부
24	-	1,024.29	192.00	18.07.16.	19.05.21.	부
25	-	1,222.00	159.88	18.07.16.	19.10.04.	부
26	-	985.05	97.92	18.08.06.	19.01.30.	부
27	-	1,029.00	165.60	18.08.27.	18.12.05.	부
28	-	924.00	151.20	18.08.27.	18.12.05.	부
29	-	485.00	84.24	18.08.27.	18.11.30.	부
30	-	4,208.60	316.80	18.09.06.	18.11.08.	부
31	-	195.00	19.44	18.09.12.	18.11.13.	부
32	-	512.70	92.10	18.09.20.	19.06.04.	부
33	-	491.14	99.00	18.10.24.	18.12.10.	부
34	-	574.00	99.72	18.11.12.	19.04.10.	부
35	-	863.89	92.04	18.12.26.	19.05.08.	부
36	-	3,085.12	295.65	19.01.04.	19.03.12.	부
37	-	520.00	99.33	19.01.28.	19.04.18.	부
38	-	76.00	14.82	19.02.18.	19.05.07.	부
39	-	6871.20	808.96	19.02.22.	19.05.07.	부
40	-	195.30	40.00	19.04.17.	19.06.18.	부
41	-	500.73	99.90	19.05.27.	19.06.18.	부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15. 12. 29. ●●● 자연휴양림(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표 2]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표 3]과 같이 운영중에 있다.

[표 1]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 청 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내역					승인일자
	위 치	구역면적 (㎡)	산지전용 면적(㎡)	건축면적 (㎡)	승인기간 (승인일자)	
영천시장	영천시 ◇◇면	1,372,286	51,594	2,056.57	2015.12.29.~ 2017.12.31	2015.12.29. (경상북도 ○○○○과)

[표 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사업기간	도 급 자	차수
	계	도금액	관금액	기 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	24,501	18,150	6,224	127			
건축+기계	5,291	4,504	787		2016.03.02.~2019.12.31.	◆◆	1차분
건축+기계+토목	6,420	3,895	2,525		2020.08.24.~2022.09.17.	□□	2차분
토목+조경	9,469	7,104	2,252	113	2016.01.26.~2019.12.31.	■	1차분
전기	1,436	1,058	364	14	2016.02.29.~2019.12.31.	△△	1차분
전기	854	558	296		2020.06.30.~2022.07.28.	▲▲	2차분
통신	364	364			2016.03.03.~2019.12.31.	▽▽	1차분
통신	350	350			2020.06.30.~2022.07.28.	▼▼	2차분
소방	125	125			2016.02.29.~2019.12.31.	☆☆	1차분
소장	192	192			2020.06.30.~2022.07.28.	★★	2차분

[표 3] ●●●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구 분	운영기간	운영인원	주요내용	비고
●●● 자연휴양림	20.11.2~20.12.23. (임시휴장 20.12.24~현재)	13명	- 숙박시설 청소 및 시설 관리, 조경수관리 등	
◁◁◁◁◁◁◁◁	19.4.15.~20.12.15 (임시휴장 20.12.16.~21.3.14) 21.3.15~현재	3명	- ▷▷▷▷▷ 예약관리 및 지도	

1.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안전관리계획에는 ①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②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훈련 ③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④재난·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⑤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사고 및 재난 발생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는 ①재난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②재난발생시 세부 조치사항 ③내·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④인명 대피·구조계획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을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2.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미실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는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일점검, 월별점검, 반기점검, 특별점검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자연휴양림의 여건에 맞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8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는 자연휴양림 내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입장할 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자료보관 미흡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는 ①안전관리 교육 결과 ②보험가입 결과 ③안전점검 실시 결과 ④사고 조치 결과를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보험가입 자료 외의 어떠한 자료도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적정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연장 등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연장 부적정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연장 절차 등을 안내하지 않아, 허가받은 자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지하수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미실시 조서

연번	상 호	용도	허 가 시 작 일	허 가 종 료 일	사후관리 이행여부	비고
1	○○○	음용수	13.11.21	18.11.20	부	
2	영천시	농업용수	15.10.22	20.10.22	시행중	
3	영천시	농업용수	15.10.22	20.10.22	시행중	
4	영천시	농업용수	15.10.22	20.10.22	시행중	
5	영천시	농업용수	15.10.24	20.10.24	시행중	
6	영천시	농업용수	15.10.24	20.10.24	시행중	
7	영천시	농업용수	15.10.24	20.10.24	시행중	
8	영천시	농업용수	15.10.24	20.10.24	부	
9	영천시	농업용수	15.10.24	20.10.24	시행중	
10	영천시	농업용수	15.10.24	20.10.24	시행중	
11	영천시	농업용수	15.10.24	20.10.24	시행중	
12	영천시	농업용수	16.05.12	21.05.11	시행중	
13	◇◇◇	공업용수	16.06.22	21.06.21	부	
14	◆◆◆	생활용수	16.07.01	21.06.30	부	
15	□□□	생활용수	16.08.01	21.07.31	부	
16	■ ■ ■	생활용수	16.08.08	21.08.07	부	
17	영천시	농업용수	16.09.20	21.09.19	부	
18	영천시	농업용수	16.11.11	21.11.10	시행중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미흡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르면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시정 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표 2] 사후관리 대상시설 규모 및 검사주기

용 도	규모	검사주기	비고
비상급수용	100톤/일 초과	2년	
공공급수용(수도시설)	100톤/일 초과	2년	
허가인가, 신고 시설 (다중이용시설)	100톤/일 초과	2년	
위 시설외 허가시설	-	5년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검사 및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지하수 수질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허가 등 적정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다.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부담 처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업체에 대하여 청문 절차를 거쳐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되, 법령해석 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310호) 제6장 2.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³³⁾(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33)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건설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건설업 등록·신고수리 및 건설업체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정보를 관리하며, 재단법인 건설산업 정보센터에 운영·관리를 위탁

통보받은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처분결과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9호, 제82조 제5호 및 제83조 제8호의2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의 종료일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받고, ●●●●(주)에 대해 영천시 ○○○○과-17502(2020. 11. 4.)호로 2020. 11. 20.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실태조사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업체로부터 아무런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처분하지 않고, “무혐의 또는 처분불가”로 정보시스템에 2021. 1. 3. 입력한 후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

한편 감사기간 중 위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2019. 10. 2.부터 2020. 2. 2.까지 124일간 기술인력이 1명만 배치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영업정지 되었어야 할 건설업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건설업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2.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3. 가.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상호 대조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2020년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주), (주)◇◇◇◇, (주)◆◆◆◆, □□□□(주), ■■■■(주), (주)△△△△ 등 6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및 피보험자자격 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받지 않았고, 조사기간 전체에 대한 기술자 배치현황이 아닌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만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술자의 상시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 지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5.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및 제22조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통보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어 위 업체에게 2020. 12. 28. 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처분사전통지 [○○○○과-19902(2020. 12. 18.)호 관련] 하였고, 위 업체로부터 위반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자본금 미달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처분을 연기하여 달라는 업체의 요청을 받아 행정처분을 68일 연기한 2021. 3. 5. 영업정지 처분하였다.

4. 건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절차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는 부서(과,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를 말하며,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20. 6. 11.부터 시행)에 근무하는 경우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청문을 종결하는 경우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21건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 주재자로부터 청문조서 및 주재자 의견서를 제출 받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0. 6. 11. 이후에도 총 3건의 청문을 실시하면서 청문 주재자를 ○○○○과 소속 직원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 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적용)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4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와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각 사유마다 4분의 1씩 감경하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와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마다 4분의 1씩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이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과태료 40만원의 처분(2018. 8. 31.)을 받고,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2019. 1. 21.)되었으므로 2차 과태료 금액에 해당하는 200만 원에 가중사유를 적용하여 250만 원을 부과(자진납부 시 100분의 20을 경감하여 200만 원 부과)하여야 했으나 1차 과태료 금액과 동일하게 40만 원을 부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해 부적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표] (주)▽▽▽▽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통보일자	통보기관	업체명	업종	위반내용	처분내용	금액(만원)	처분일	비고
'19.1.21.	▼▼부	(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40	'19.1.30.	
'18.4.16.	▼▼부	(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40	'18.8.31.	

그 결과 위 “1”부터 “5”와 같이 건설업 업무 담당자가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건설업 관리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된 ●●●●(주)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에 따라 적정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③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주), (주)◇◇◇◇◇, (주)◆◆◆◆◆, □□□□(주), ■■■■(주), (주)△△△△ 등 6개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고,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단, 시험관리인은 제외한다),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등 품질관리활동비를 산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 착공 시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 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품질 확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착공 시 품질관리자 2명 이상을 포함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관리인건비를 포함한 품질관리비를 설계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2020. 6. 18. 착공신고서 제출 시 품질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는 것으로 품질시험계획서 및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실착공일 2020. 10. 6.부터 2021. 3. 10. 품질시험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1명을 추가 배치 할 때까지 관련법령에 규정된 인원대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추가 배치된 품질관리자에 대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를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건설사업관리인은 시공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품질관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영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품질관리비활동비 중 품질관리자 인건비 125,027천 원을 설계서에 미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걱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표 2] 품질관리비 미계상 현황

(단위 : 천 원)

품 명	단위	수량	설계 반영금액	미계상 금액	합 계	비고
1. 품질관리비			12,819	125,027	137,846	
가. 품질관리시험비	식	1	9,068	-	9,068	
나. 품질관리활동비	월	36	3,751	125,027	128,778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자 미배치(1인), 품질관리비 일부 미계상 등 품질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2.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공사착공 등 안전관리계획 이행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항타기,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의 안전관리 지도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일인 2021. 4. 30. 이전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2중시설물인 교량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의 공사를 착공(대상공종 실착공일 2020. 10. 6.) 하였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안전관리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3. 설계 경제성 검토 미흡 등 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 등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산출 내역서 상 교량의 교각 시공을 위한 거푸집이 목재원형거푸집으로 되어 있으나 강재거푸집으로 시공하였고, 순성토 운반 단가 산정 시 덤프 15톤과 24톤에 대한 경제성 비교·검토 없이 덤프 15톤을 적용하여 단가를 산출하였다.

[표 3] 공사비 과다 계상 현황

(단위 : 천 원)

항 목	계약금액	재산정 금액	감액금액	비고
합 계			11,027	
거푸집 변경	9,828	3,846	5,982	
순성토 운반장비 변경	41,530	36,485	5,045	

그 결과 위 [표 3]과 같이 공사비 11,027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있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설계서에 미계상된 품질관리활동비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11,027천 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영천시 ○○○○○에서는 “●●●●●●●●●● 정비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주)와 2020. 10. 28. 공사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공정률)
		계	도급	관급			
●●●●●●●●●● 정비공사	오수관로 L=2.9km 배수설비 44가구	770	537	233	2020. 11. 3. ~ 2021. 8. 29.	◇◇◇◇(주)	80%

1. 품질시험계획서 미작성 등 품질관리업무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라 한다)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 착공 시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 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착공 시 품질관리자 1명 이상을 포함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2020. 11. 3. 착공신고서 제출 시 품질시험 계획서 및 품질관리자지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착공일인 2020. 11.월 말경 (정확한 날짜 모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험실 설치 및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등 품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시공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시험실 및 시험·검사장비 미설치,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 품질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부실, 미승인 등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천공기(10미터 이상), 항타기, 항발기 및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될 가설공사는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등을 포함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 및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가설구조물의 공사를 할 때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해당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상세도면,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천시 ○○○○○에서는 위 공사의 건설사업자로부터 2020. 11. 3.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시공자에게 보완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확인·검토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 없이 승인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조립식 간이흙막이를 사용하여 2020. 12월부터 2021. 4월까지 공사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안전관리 업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3. 공사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항 및 [별표 5]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배치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 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신고서가 제출되면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천시 ○○○○○에서는 2020. 11. 3. 제출된 공사착공신고서에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 된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AB에 대하여 건설기술인 수첩 사본만이 첨부되어 있고,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여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한편 감사기간 중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신고 된 AB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인 상하수도 분야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를 한 인정일수는 509일로 배치기준인 3년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 위 공사현장에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 공사추진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시험시설 구비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공사현장 별 배치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2018. 4. 24.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품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8. 5. 25. (주)○○○○○○와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9. 12. 17. 계약을 해지하였다.

[표] ●●●●●●●●사업 실시설계 현황

(단위 : 천 원)

과업명	계약당사자	최종과업기간 (당초과업기간)	최종계약금액 (당초계약금액)	계약해지일	계약해지사유
●●●●●●●● 사업 실시설계	(주)○○○○○○	2018.05.31.~ 2020.02.12. (2018.05.31.~ 2018.11.30.)	40,228 (74,577)	2019.12.17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취소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의거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확보 등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대상 부지의 확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2. 12. “2019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2018. 3. 12. 道の 부지확보 증빙자료 보완 제출 요구에 2018. 9. 20. 토지 소유자(AC 등 7인)가 아닌 ◇◇◇◇◇◇◇◇◇◇◇◇◇◇의 토지 사용 동의서를 道에 제출] 2018. 4. 24. “●●●●●●●●●●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품의하여 2018. 5. 25. (주)○○○○○○와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기부채납 거부 등으로 사업부지를 미확보하여 2019. 12. 17. 실시설계 용역을 타절·준공하여 40,228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도로점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6조 제2항, 제117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1개월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과에서는 도로점용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가 1개월 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토지·건물의 소유주 변경, 소유자 사망 등으로 권리·의무 승계 발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건에 과태료 25,000천 원을 미부과하는 등 도로점용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지연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 수	50	10	11	13	13	3
과태료부과금액	25,000	5,000	5,500	6,500	6,500	1,500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도로법」 제106조 및 제1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도로점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계 25,000천 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영천시에서는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편입부지 내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에 따르면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은 손실보상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천시 ○○○○과와 ●●과에서는 “□□□□□□□□□□ 개설회사”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부지 내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에 따른 공사비 지급 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사업임에도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2,279천 원 상당을 부담 집행하였다.

[표] 지장물 이설공사비 부가세 납부 현황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업명	지급처	이설공사비 지급금액		
			계	공급가액	부가세액
총 계	10건		248,074	222,795	22,279
○○○○과	□□□□□□□□□□ 개설회사 등 3건	○○○○○회사	10,906	9,915	991
●●과	■■■■■■■■■■■■■■■■■■■■ 확포장공사 등 7건	◇◇지사	234,168	212,880	21,288

※ 영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주의)
- ② ○○○○○회사 ◇◇지사에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22,279천 원에 대하여 경정 청구하여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신고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2020. 5. 19.과 2020. 11. 16. 건축주 AM으로부터 영천시 ●●면 ◎◎리 ㄴ번지 상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신청 받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0. 5. 26.과 2020. 11. 24. 건축신고를 아래 [표]와 같이 수리하였다.

[표] 건축신고 현황

구분	허가(신고) 번호	대지위치	용 도	건축주	신고 신청일	신고 수리일	신고내용
신축신고	2020-○○○○○○과 -신축신고-ㄱ	●●면 ◎◎리 ㄴ	단독주택	AM	2020. 5. 19.	2020. 5. 26.	신축 111.76㎡
변경신고					2020. 11. 16.	2020. 11. 24.	신축 137.37㎡

1.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수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인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감리자는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건축주 AM이 ●●●면 ◎◎리 ㄴ번지에 신청한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를 초과한 111.76㎡, 137.37㎡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임에도 2020. 5. 26.과 2020. 11. 24. 건축신고 대상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제대로 공사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공사감리자가 없이 건축공사를 하게 되었고, 설계비 및 감리비 등 건축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었다.

2. 건축인허가 중 발생한 위법행위 미조치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르면 고발조치(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건축주 AM이 ●●면 ◎◎리 ㄴ번지에 신청한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 변경신고에 대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³⁴⁾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현지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당초 건축신고한 규모 1개동 111.76㎡를 초과하여 2개동 137.37㎡로 건축 관계규정에 위반되게 공사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건축인허가 중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없이 부당하게 건축신고가 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복합민원 협의 지연 등 민원처리 소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 11. 16. 13:45에 건축주 AM이 ●●면 ◎◎리 ㄴ번지에 신청한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 변경신고에 대하여 처리기한이 2020. 11. 23. 13:45임에도 처리기한이 지난 2020. 11. 23. 15:13에 영천시 ◇◇◇◇◇에 개인하수시설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사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4) 2020. 6. 4. 「영천시 건축조례」의 일부개정령으로 건축신고 현장조사·검사가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본건은 당초 건축신고가 2020. 5. 26. 수리되어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설계용역 부적정

영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2019. 1. 9. “◇◇◇◇◇◇◇◇”과 계약하고 2019. 3. 15. 완료하였다.

[표 1] 용역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 설치공사 설계용역	◆◆동 르번지	설계용역 1식	4,480	2019.1.9.	2019.1.9.~ 2019.3.15.	◇◇◇◇◇◇◇◇

「건축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건축사법」 및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영천시 ○○과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설계 도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규정에 맞지 않는 경량철골조로 설계하였으며, 위 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설계 도서를 요구하지 않고 2019. 3. 15. 설계용역을 준공하였다.

2. 건축협의 부적정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착공 전 허가권자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전 미리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건축허가제도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도록 하였다.

또한 영천시 ●●●●●과에서는 상기 사업의 공용건축물 협의 건을 2019. 7. 16. 접수하여 처리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에 미달 되는 경량 철골조로 설계되었음에도 2019. 7. 23. 공용건축물 증축 협의 통보하는 등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협의 처리 하였다.

[표 2] 공용건축물 협의 현황

공사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착공일	준공예정일	건축협의일	부적합 내용
○○○○○○○ 설치공사	◆◆동 르번지	업무시설	2019.5.17.	2019.8.23.	2019.7.18.	내화구조 미설치 (경량철골조설치)

3. 건축물 권리보전 조치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총괄자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천시 ○○과에서는 ○○○○○○○ 60.52㎡를 증축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2019. 8. 22.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완료 통보를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등기 조치를 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건축법」에 따라 공사완료 통보를 이행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권리보전에 필요한 등기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시정)
- ③ 「건축법」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설계한 ◇◇◇◇◇◇◇◇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천시 ○○○○○과에서는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면 ◆◆리 □번지 □□□□□ □□□ 외 3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만 2회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총 50,824천 원을 부과하지 않고³⁵⁾ 있다.

그 결과 위반 건축물의 무질서에 따른 환경 악화와 적법하게 건축하고 있는 행위자와의 형평성 등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35) 2021.5.11. 감사 개시일 이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 감사기간 중에 관련 자료 요청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2021.5.13.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과-24509호)

[표]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위 치	적발일	건축주	위반내용 (면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비고
계	계				50,824	
●●면 ◆◆리 □	2019.4.9.	□□□□□□□□	무단증축 (135㎡)	-1차 : 2020. 9.28. -2차 : 2020.12.15.	44,077	
◎◎동 ㅂ	2019.1.4.	■■■■■■■■	무단증축 (390㎡)	-1차 : 2019. 4. 8. -2차 : 2020. 8.27.	2,734	
◎◎동 ㅅ	2019.1.4.	■■■■■■■■	무단증축 (340㎡)	-1차 : 2019. 4. 8. -2차 : 2020. 8.27.	3,469	
◇◇동 ㅈ	2019.5.15.	BA	무단증축 (54.4㎡)	-1차 : 2020. 8.27. -2차 : 2020.11. 4.	544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50,824천 원 부과 등 위반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